의안번호	2209639
의 뢰 인	안도걸 의원
회 답 일	2025. 4. 15.
추계번호	25F21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회발전특구에 위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0조의2제3항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에 공장을 신설·증설하려는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개정안) 2030.12.31.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80조의2제3항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기회발전특구[1]에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규정의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됨(안 제80조의2 제3항)

○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의미함

○ 기회발전특구 지정지역: 대전광역시(유성구), 부산광역시(동구·남구 등), 대구광역시(달성군·북구 등), 울산광역시(울주군 등),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 등), 강원특별자치도(강릉·원주·영월·동해 등), 충청남도(보령·예산·서산 등), 충청북도(진천·제천·보은 등), 전북특별자치도(김제·전주 등), 전라남도(광양·여수 등), 경상북도(포항·구미·상주 등), 경상남도(고성·통영 등),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

❑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에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규모 등의 정보가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함

○ 동 감면규정은 2023년 말 신설되어 2024년부터 시행되어 아직까지 동 규정에 따른 감면실적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임

○ 또한 기회발전특구 내 공장의 신설·증설 및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은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현재로서는 기회발전특구에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과 해당 기업이 취득할 사업용 부동산의 가액 등에 대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1)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성 등을 지원하는 구역을 의미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설희	02-6788-4836	shjang@assembly.go.kr